Ⅲ 실태로 본 개인형 사적연금

01 개인연금의 가입/수급 실태 및 인식

02 개인형 퇴직연금(IRP)

03 사적연금 평가 및 노후준비 교육

* 개인형 사적연금은 개인연금과 개인형 IRP를 포괄하는 개념임.

01
개인연금의 가입/수급 실태 및 인식

가. 개인연금 가입 실태 및 인식

◆ 한 번도 개인연금 가입경험이 없는 비율이 47.1%로 조사됨.

● 현재 개인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비율은 22.1%였으며, 수급 중이거나 대기자*인 경우는 14.0%, 현재 미가입 상태이나 과거에 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는 17.1%로 조사됨(복수응답 기준).

* 의무납부 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못해 연금수급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표 Ⅲ-1 개인연금 가입 상태(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현재 납부하고 있음 (한꺼번에 납부 포함)	현재 연금 수급 중/ 납부가 완료되었으나 아직 수급이 시작되지 않음	현재 미가입 상태이나 과거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험이 있음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인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음
전체	2,035	22.1	14.0	17.1	47.1
20대	351	13.1	0.1	6.2	80.7
30대	402	26.6	0.7	18.1	54.8
40대	456	29.6	5.2	21.9	43.8
50대	407	25.0	19.0	23.9	32.7
60대 이상	418	14.3	43.4	13.3	29.2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가입한 개인연금 납입 방법은 대부분 월납 형태였으며, 1회 납부 보험료는 평균 20.76만 원으로 조사됨.

- 가입한 개인연금은 '매월 보험료 납입'(99.5%)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 개인연금의 1회 납부 보험료는 20.76만 원이었으며, 납부액 구간별로는 '20~25만 원 미만'(29.3%)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2013년 이후 가입한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부액은 오히려 이전 가입에 비해 적은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때문으로 이해됨.

* 납입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경우를 의미하여,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개인형 IRP(퇴직연금)가 해당됨.

그림 Ⅲ-1 개인연금 1회 납부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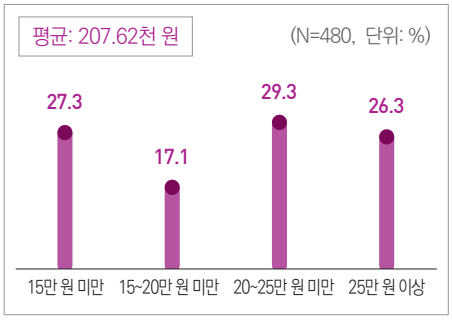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표 Ⅲ-2 개인연금 1회 납부 보험료 (단위: 명, 만 원)

구분		사례 수	평균
전체		480	20.76
세제적격	2001년 이전 가입	41	24.00
	2001년~2012년 가입	249	21.88
	2013년 이후 가입	82	16.21
세제비적격		108	20.41

◆ 가입한 개인연금 총가입 기간은 평균 79.33개월이었으며, 가입구간별로는 '9년 이상'(29.1%), '3년 미만'(24.5%)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Ⅲ-2 개인연금 총가입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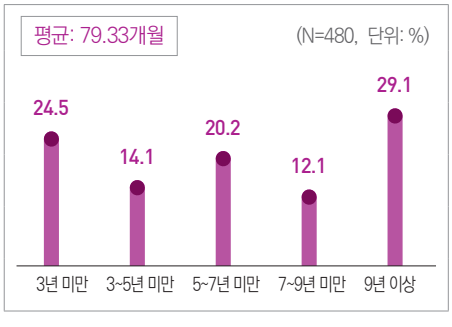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표 Ⅲ-3 개인연금 가입기간 (단위: 명, 개월)

구분		사례 수	평균
전체		480	79.33
세제적격	2001년 이전 가입	41	171.09
	2001년~2012년 가입	249	79.84
	2013년 이후 가입	82	19.52
세제비적격		108	89.16

◆ 개인연금은 주로 '보험설계사(GA 등 대리점 포함)' 등을 통해 가입함.

● 개인연금의 79.3%는 '보험설계사(GA 등 대리점 포함)'를 통해 가입하고, '은행 임직원(창구 등)'은 9.4%, '보험회사 임직원'은 6.0%로 매우 낮았음.

그림 Ⅲ-3 개인연금 가입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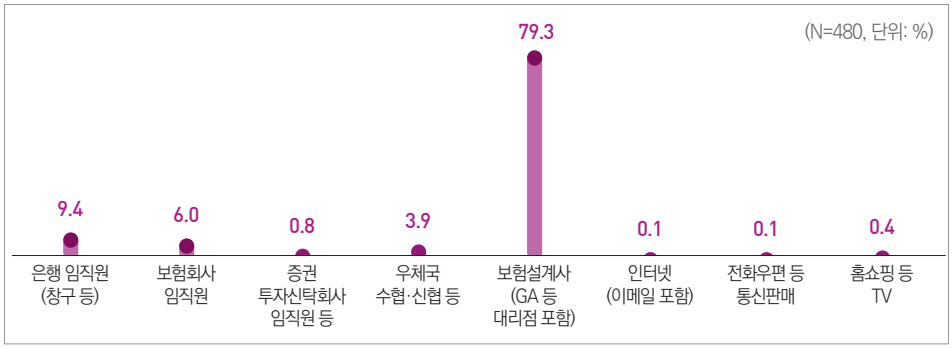

주: 세제적격 및 비적격 개인연금 모두 포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상품설명의 충분성)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설명은 충분과 불충분으로 의견이 나뉘었음.

● 개인연금 납부자·수급자(대기자 포함)·경험자에게 연금상품 구매 시 판매자의 설명에 대해서는 '우수' 27.6% (우수: 27.1%+매우 우수: 0.5%)로 나타남.
- '보통'은 52.3%, '미흡'은 20.2%(매우 미흡: 1.6%+미흡: 18.6%)였음.

● 상품 설명이 미흡하다고 느낀 응답자의 49.5%가 '약관 및 안내자료 등에 소개된 상품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으로 응답함.
- 다음으로 '상품자체 보다는 세제 등 관련 제도가 복잡하여 종합적인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 25.9%로 나타남.

그림 Ⅲ-4 개인연금 상품 설명의 충분성 **그림 Ⅲ-5 개인연금 상품 설명이 미흡한 주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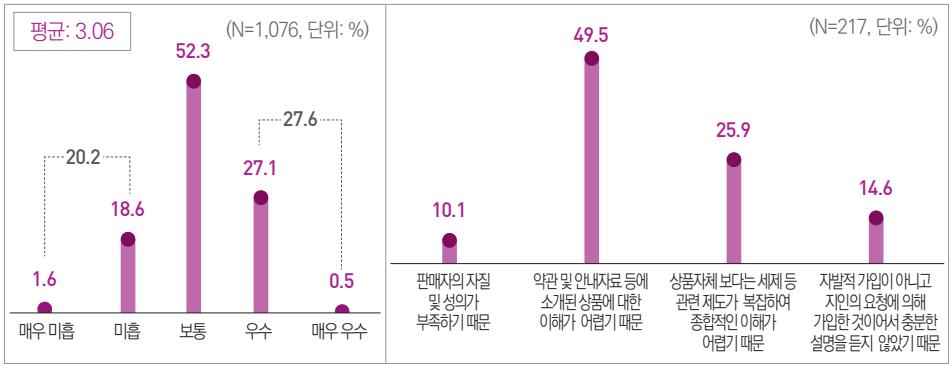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상품비교 경험) 개인연금 납부자·수급자(대기자 포함)·경험자 중에서 개인연금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상품비교'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3.4%였음.**

● 상품비교 경험이 있는 응답자(1순위 기준)의 69.6%는 '판매자(보험설계사, 창구직원 등)의 설명'을 통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직접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비교'(17.6%), '개인연금 상품비교 홈페이지(금융감독원, 각금융협회) 활용'(12.0%) 등으로 나타남.

● 개인연금 상품 비교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연금액 수준'이 45.4% 로 높게 조사되었음.

- 다음으로 '보험료 수준'(16.6%), '금융회사의 평판 또는 안정성'(14.3%), '과거 높은 수익률 달성'(11.2%) 순이었음.

그림 Ⅲ-6 개인연금 구매 전 상품비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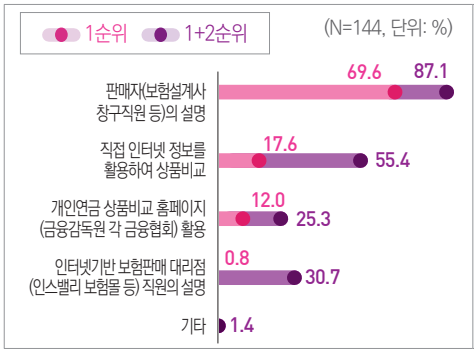

그림 Ⅲ-7 개인연금 상품비교 시, 가장 중요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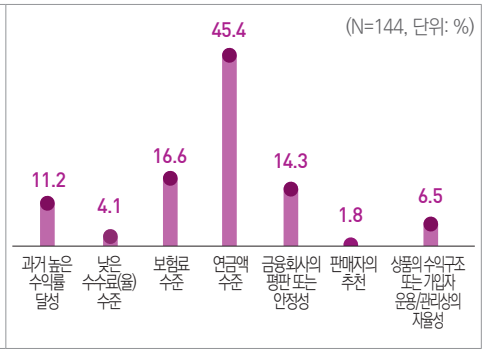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가입하고 있는 개인연금에 대해 37.4%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에 대해 응답자의 37.4%(만족: 37.1% + 매우 만족: 0.3%)가 '만족', 55.7%는 '보통'이었으며, '불만족'은 (7.0% = 매우 불만족: 0.4% + 불만족: 6.6%) 10% 미만으로 나타남.

그림 Ⅲ-8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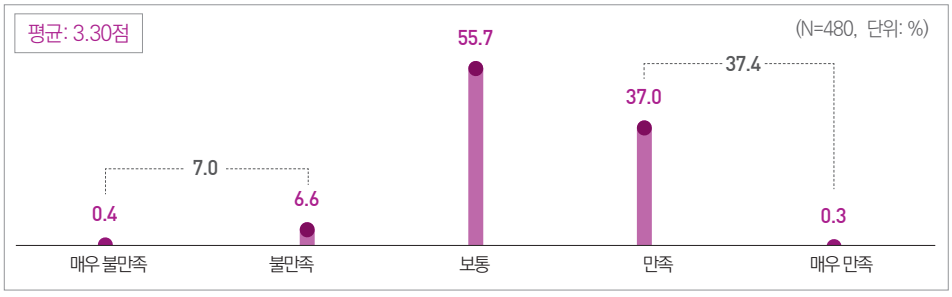

주: 1) 세제적격 및 비적격 개인연금 모두 포함.
2) 점수는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임. 매우만족=5 ~ 매우불만족=1.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수익률이 낮아서'(49.2%)가 가장 높았음 (1순위 기준).**

● 다음으로, '예상보다 연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34.8%)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다른 응답 비율은 매우 낮았음.

그림 Ⅲ-9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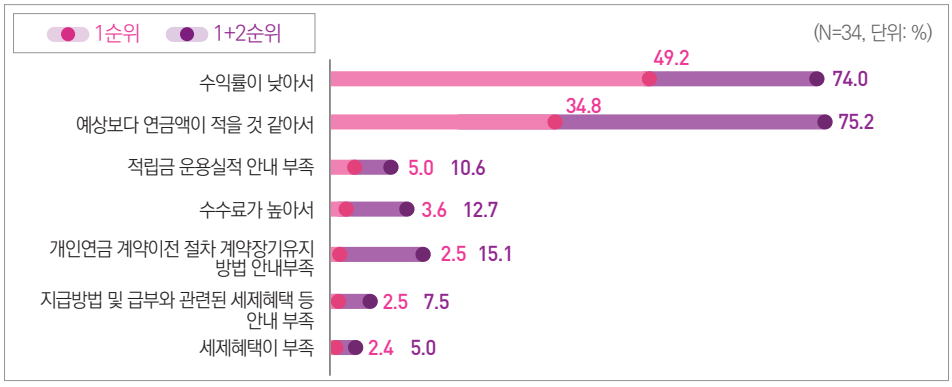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개인연금 가입 동기는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이 부족할 것 같아서'가 44.8%로 높았음.**

● 다음으로 '보다 여유로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는 27.3%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응답 비율은 매우 낮았음.

● 특이한 점은 2순위까지 고려한 복수응답으로 할 경우 '보다 여유로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가 63.0%로 가장 높음.

그림 Ⅲ-10 개인연금 가입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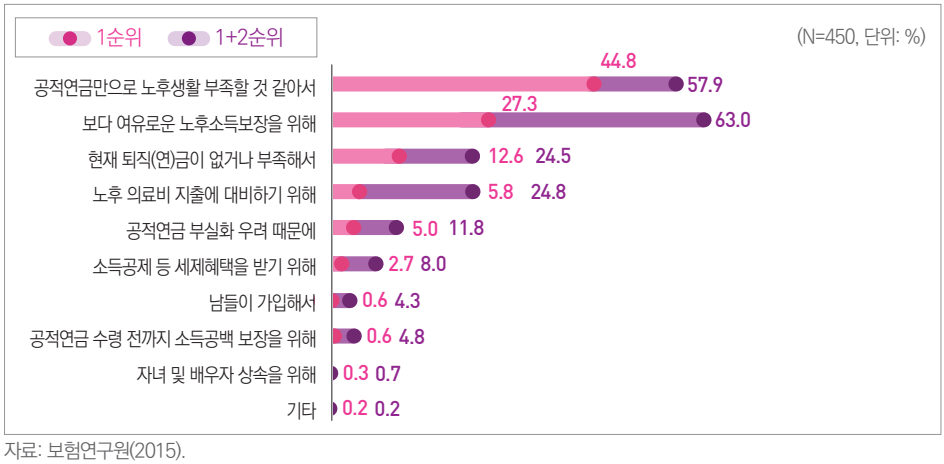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개인연금 가입 후 중도 해약 또는 해지 경험 비율은 30.2%였음.

- 중도 해약 또는 해지 경험 있는 자가 이후에 계약 부활을 신청한 경우는 5.9%(63명/1,076명)로 매우 낮음.
- 중도 해약 또는 해지한 개인연금의 가입기간은 평균 49.98개월이었으며, 가입기간 구간별로는 '2~4년 미만'이 40.1%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6년 미만'이 28.8%임.
  - 20, 30대는 해지세를 물더라도 해지하는 경향, 40대 이상에서는 해지세를 고려하여 해지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인연금을 중도에 해약·해지한 이유는(1순위 기준)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가 44.3%, '목돈이 필요해서'가 39.4%로 높게 조사됨.

표 Ⅲ-4 중도 해약·해지한 개인연금 가입기간

(단위: 명, %, 개월)

구분	사례 수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년 이상	평균
전체	324	12.5	40.1	28.8	18.6	49.98
20대	20	52.6	47.4	0.0	0.0	19.72
30대	68	12.3	59.1	21.2	7.5	38.28
40대	92	5.5	38.6	36.7	19.1	54.66
50대	91	12.6	34.2	28.0	25.3	54.39
60세 이상	53	9.6	26.3	36.9	27.2	60.65

자료: 보험연구원(2015).

그림 Ⅲ-11 개인연금 중도 해약·해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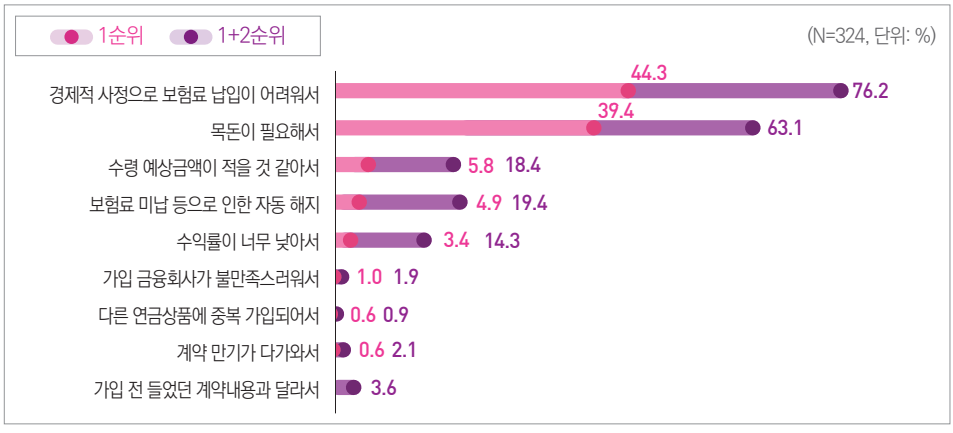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나. 개인연금 수급 실태 및 인식

◆ **개인연금·만기일시금 수령 경험에 대해서는 '연금이나 만기일시금을 수령한 적 없다'가 73.4%로 가장 높았음(복수응답).**

- '연금이나 만기일시금을 수령하고 있다(했다)'는 18.6%, '대기자'*는 8.0%로 나타남.
  * 납부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수급연령 혹은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수급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60세 이상은 연금 혹은 일시금 수령경험이 각각 11.8%, 54.9%로 높았음.
  - 이를 볼 때 개인연금의 연금형태로의 수령을 유도하는 방향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표 Ⅲ-5 개인연금·만기일시금 수령 경험(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연금이나 만기 일시금을 수령 중(함)	대기자	연금이나 만기 일시금을 수령한 적 없다
전체	1,076	18.6	8.0	73.4
20대	68	1.8	0.6	97.6
30대	182	0.2	0.6	99.1
40대	257	1.3	5.1	93.6
50대	274	11.8	16.4	72.0
60세 이상	296	54.9	9.1	36.0

주: 현재(혹은 과거에) 수령하거나(혹은 수령한) 납부기간을 채우고 수급하기로 되어 있는(대기 중인) 개인연금이 있는 가입자(수급자 혹은 대기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수급자의 대부분은 연금 수령 시 선택한 수령기간으로는 종신형을 선호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함.**

- 연금 수령 시 선택한 기간으로는 '종신'이 39.4%로 높았으며, '20년'은 28.7%이고, '10년'(11.4%)과 '15년'(10.4%)은 10%대로 나타남.
  ※ 이를 통해 볼 때 종신연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종신연금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연금을 받는 기간은 '2년 미만'이 32.9%, '2~4년 미만'이 29.3%로 나타났고, 평균 59.43개월임.

그림 Ⅲ-12 연금 수령 시 선택한 수령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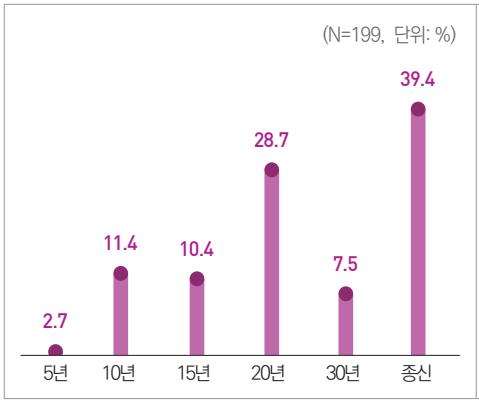

그림 Ⅲ-13 실제 연금을 받은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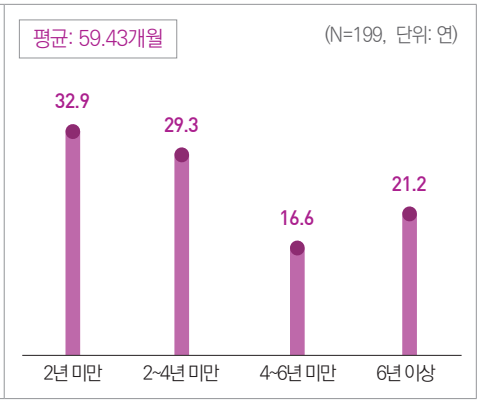

주: 현재(혹은 과거에) 수령하거나(혹은 수령한) 납부기간을 채우고 수급하기로 되어 있는(대기 중인) 개인연금이 있는 가입자(수급자 혹은 대기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현재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5~50만 원 미만'(33.1%)과, '25만 원 미만'(31.1%)이 비슷하게 나타남.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44.63만 원임.**

● 한편, 수급 대기자의 예상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45.40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구간별로는 '20~40만 원'(35.1%), '60만 원 이상'(24.7%)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4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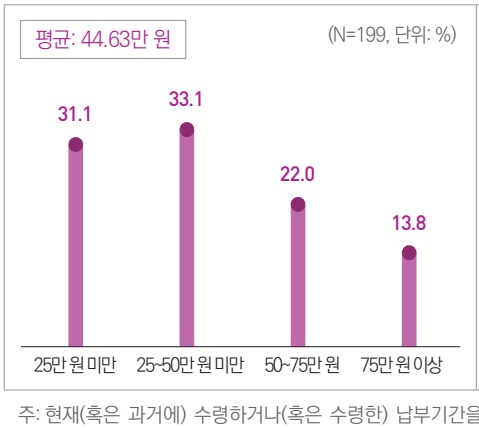

그림 Ⅲ-15 대기자의 예상 월평균 연금 수령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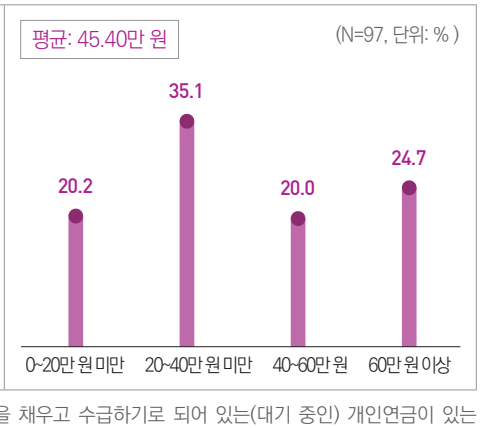

주: 현재(혹은 과거에) 수령하거나(혹은 수령한) 납부기간을 채우고 수급하기로 되어 있는(대기 중인) 개인연금이 있는 가입자(수급자 혹은 대기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할) 이유(대기자 포함)는 '목돈이 필요해서'(65.1%), '연금과 일시금 간 세제혜택 차이가 적어서'(18.9%) 등으로 조사됨.

- 일시금을 사용한 주된 용도로는 '예금 등 원리금보장 금융상품에 가입'(35.1%), '자녀 관련 지출(교육비,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31.6%) 등으로 응답됨.

※ 퇴직 후 목돈을 활용하여 노후보장 상품을 활발히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됨.

그림 Ⅲ-16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할) 이유 **그림 Ⅲ-17 일시금을 사용한 주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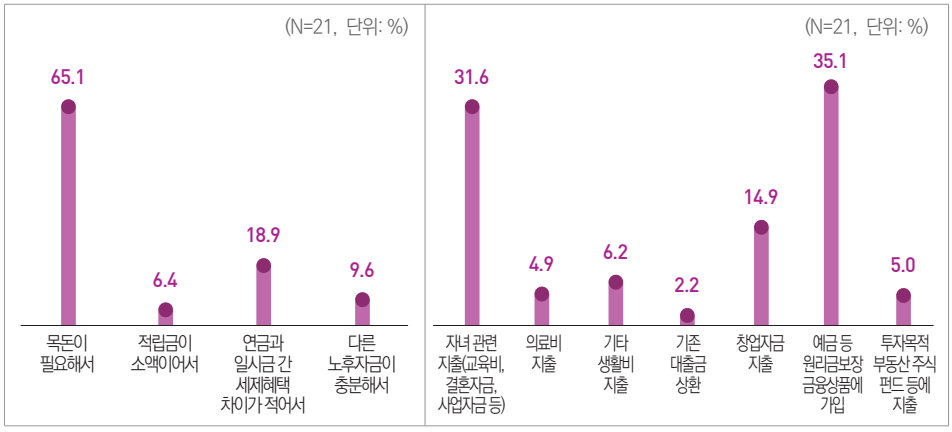

주: 현재(혹은 과거에) 수령하거나(혹은 수령한) 납부기간을 채우고 수급하기로 되어 있는(대기 중인) 개인연금이 있는 가입자(수급자 혹은 대기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수급 중에 있는 개인연금에 대해 응답자(대기자 포함)의 35.9%가 '만족'(만족: 35.0% + 매우 만족: 0.9%)한다고 나타남.

- 수급 중 혹은 수급예정인 개인연금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은 14.9%(매우 불만족: 0.3% + 불만족: 14.6%)임.
- 불만족 하는 이유로(1순위 기준) '예상보다 연금액이 적어서'가 59.4%, '수익률이 낮아서'는 32.2%로 조사됨.

그림 Ⅲ-18 수급 중 혹은 수급예정인 개인연금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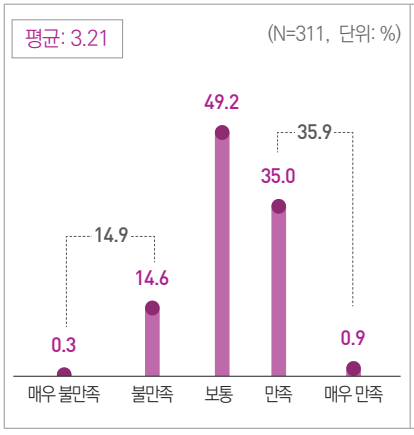

그림 Ⅲ-19 수급 중 혹은 수급예정인 개인연금의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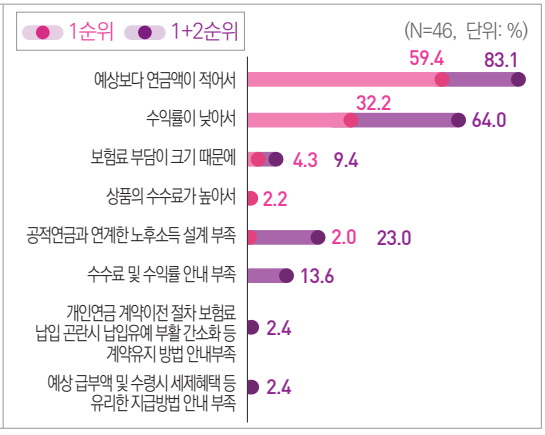

주: 현재(혹은 과거에) 수령하거나(혹은 수령한) 납부기간을 채우고 수급하기로 되어 있는(대기 중인) 개인연금이 있는 가입자(수급자 혹은 대기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향후 희망하는 연금 수령 방법으로는 '연금형태의 수령'이 87.7%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연금과 일시금의 혼합 수령'(8.5%)과 '일시금 수령'(3.7%)은 낮게 응답됨.
- 상대적으로 세제적격에 비해 세제비적격 연금형태로 수령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음.

※ 연금형태의 수령 의사가 높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연금수령보다 일시금 수령비율이 높다는 것과 괴리가 있음. 이는 연금퍼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표 Ⅲ-6 향후 희망하는 연금 수령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연금 수령	연금과 일시금의 혼합 수령	일시금 수령
전체		480	87.7	8.5	3.7
세제적격	2001년 이전 가입	41	85.8	10.3	3.8
	2001년~2012년 가입	249	85.6	10.3	4.1
	2013년 이후 가입	82	89.3	7.2	3.4
세제비적격		108	92.3	4.6	3.1

주: 개인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향후 수급시점에서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기 원하는 이유로(1순위 기준) '세제 및 물가상승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일시금이 유리할 것 같아서'가 40.4%로 높음.

● 다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기 위해'(13.8%), '자녀와 관련된 지출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10.6%) 등으로 나타남.

그림 Ⅲ-20 향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원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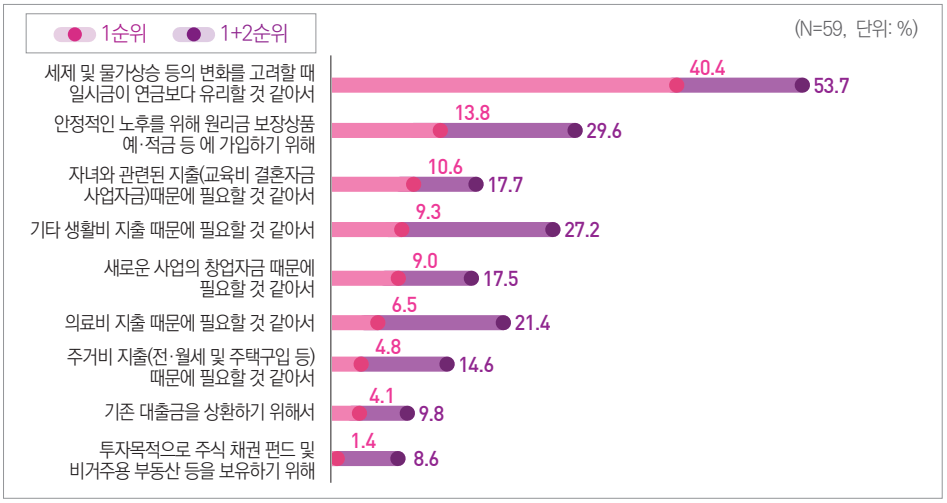

주: 1) 세제적격 및 비적격 개인연금 모두 포함.
2) 개인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향후 희망하는 개인연금 수령 기간으로는 종신이 54.9%로 가장 높았음.

● 희망하는 수령 기간은 '종신'이 54.9%로 가장 높았으며, '20년'(21.2%), '30년'(10.7%)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Ⅲ-21 향후 희망하는 개인연금 수령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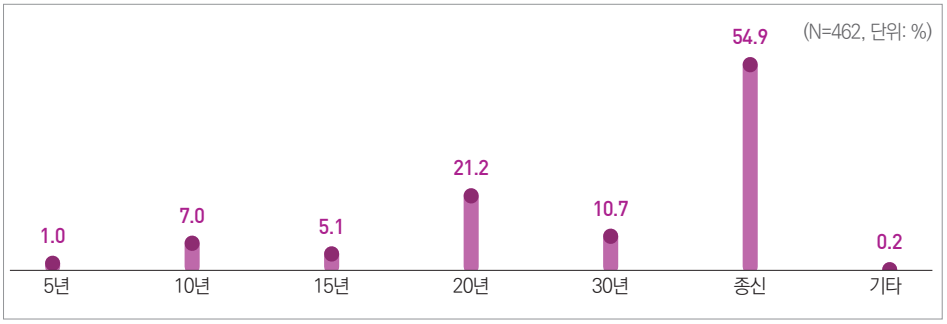

주: 1) 세제적격 및 비적격 개인연금 모두 포함.
2) 개인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다. 서비스 활용 및 제도 개선 견해

1) 연금저축 상품비교공시 활용 등

◆ **연금저축 상품비교공시 서비스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연금상품 구매 전 상품비교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13.7%로 낮은 편임.**

● 동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그 만족수준은 다소 높은 61.0%로 조사됨.

표 Ⅲ-7 연금저축 상품비교공시 서비스 활용여부

(단위: %, 명)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44	13.7	86.3
연령별	20~39세	50	12.2	87.8
	40~59세	76	15.3	84.7
	60세 이상	18	11.6	88.4
성별	남성	60	9.6	90.4
	여성	84	16.6	83.4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개인연금 납부자·수급자(대기자 포함)·경험자 중 연금저축 계좌이체제도 서비스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4.8%로 낮음.**

● 이용 경험자가 생각하는 활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품(계좌)의 안전성 또는 안정성(원금보장 등 관련)'이 30.7%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과거 가입 상품의 수익률이 낮음)'이 24.0%였음.

● 동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46.4%(만족: 45.5%+매우 만족: 0.9%)이고, '보통'이 46.8%였으며, '불만족'은 6.9%로 낮았음.

그림 Ⅲ-22 계좌이체 서비스 활용 시 가장 중요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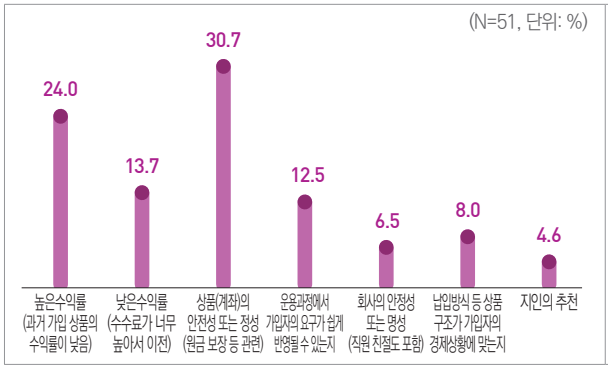

그림 Ⅲ-23 계좌이체 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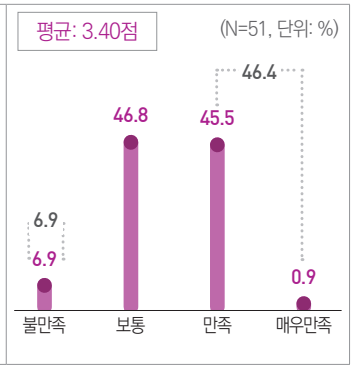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2) 연금세제 변경에 대한 인식

◆ **현행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지원 방식의 변경(소득공제 →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17.2%로 낮았음.**

- 세제지원방식 변경을 인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변경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만족'은 28.6%, '불만족'은 22.7% (매우 불만족: 1.5% + 불만족: 21.2%)였으며, 48.7%는 '보통'으로 응답함.
- 세제지원방식 변경에 대한 주된 불만족 이유로는 67.8%가 '세제지원 금액이 줄어서(공제세율이 낮아서)'로 응답함.

그림 Ⅲ-24 세제지원방식 변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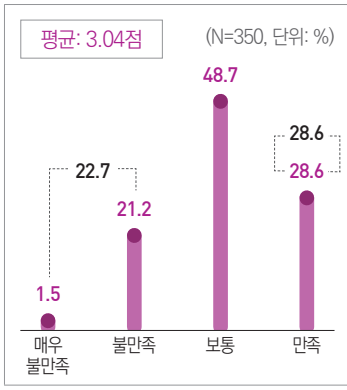

그림 Ⅲ-25 세제지원방식 변경에 대한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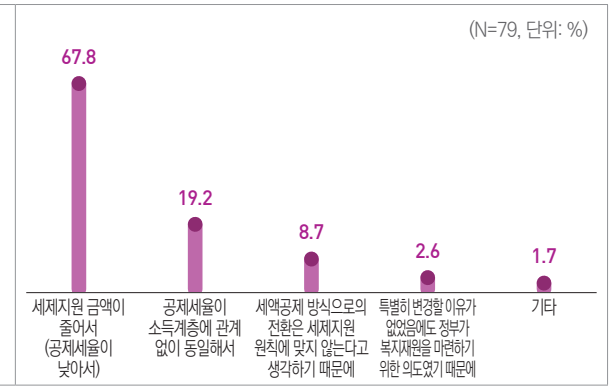

주: 점수는 5점 척도로 산출함(매우 만족=5 ~ 매우 불만족=1).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연금저축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제방식으로, '세액공제방식으로 하되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율 모두를 조정해야 한다'가 35.3%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다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29.6%), '세액공제방식으로 하되 공제대상금액만 조정하면 된다'(23.2%)로 조사됨.

표 Ⅲ-8 연금세제 공제방식 변경 개선방안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다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	공제대상 금액과 세액공제율 모두 조정	공제대상 금액만 조정	세액 공제율만 조정	기타
전체	2,035	29.6	35.3	23.2	10.9	1.0
20대	351	24.7	36.0	24.2	13.1	2.0
30대	402	31.0	35.1	21.5	12.2	0.1
40대	456	31.9	35.0	25.1	7.3	0.7
50대	407	25.9	39.3	22.9	11.3	0.6
60세 이상	418	33.6	31.2	22.2	11.0	1.9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공제대상 금액 조정 방안으로 '공제대상금액을 현행 수준보다 높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40.0%, '공제대상금액을 현행수준보다 높이고, 연금 지급단계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하한을 1,200만 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35.6%로 비슷하게 응답함.

- '공제대상금액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연금 지급단계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하한을 현재 1,200만 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24.4%임.

● 세액공제율 조정 방안으로 '현행 세액공제율보다 높이되 우리나라 중위소득으로 표현되는 5천5백만 원의 세율 기준인 16.5% 정도로 설정되어야 한다'가 42.7%로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평균적으로 세액공제율 13.2%를 유지하되, 저소득층일수록 공제율을 높게 설정하도록 한다'가 25.4%로 조사됨.

그림 Ⅲ-26 공제대상 금액 조정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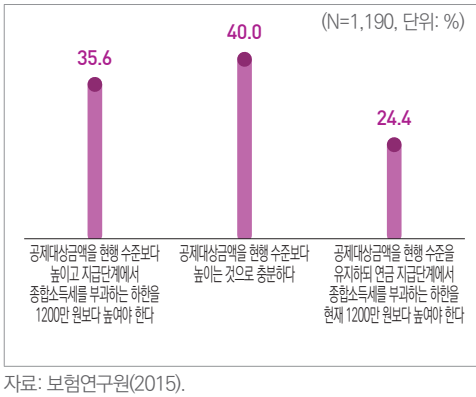

그림 Ⅲ-27 세액공제율 조정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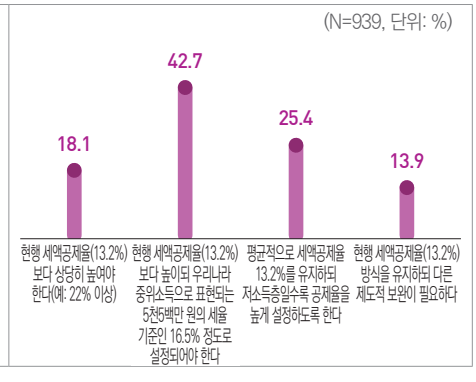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새로운 개인연금 정책'*에 대해 '찬성'은 28.3%(찬성: 27.7% + 적극 찬성: 0.6%), '반대'는 30.2%(매우 반대: 3.0% + 반대: 27.2%)로 유사함.

* 현행 연금저축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되 장기 보유를 의무화하기 위해 해지를 제한하거나 해지 시 세금부과 등을 부과하는 새로운 연금정책.

- 새로운 개인연금 정책 실시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응답자의 과반이(55.7%) '어쩔 수 없이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를 이유로 들었음.

그림 Ⅲ-28 새로운 연금정책 실시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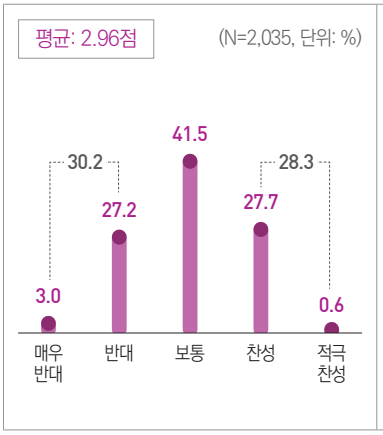

그림 Ⅲ-29 새로운 연금정책 실시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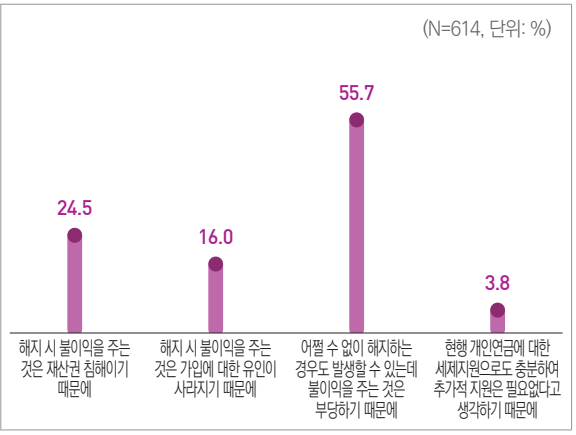

주: 점수는 5점 척도로 산출함(적극 찬성=5~매우 반대=1, 이하 동일).
자료: 보험연구원(2015).

◆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 시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임.

-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 시,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해 '찬성'은 50.6%(찬성: 48.0% + 매우 찬성: 2.6%)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는 16.4%(매우 반대: 0.8% + 반대: 15.6%)였음.
- 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5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추가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가 41.5%로 높았음.

표 Ⅲ-9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평균
전체	2,035	0.8	15.6	33.1	48.0	2.6	3.36
20대	351	0.6	18.2	37.9	42.7	0.6	3.24
30대	402	1.2	18.1	31.1	47.8	1.8	3.31
40대	456	1.6	16.7	36.8	42.1	2.8	3.28
50대	407	0.4	10.7	27.1	57.4	4.4	3.55
60세 이상	418	0.3	14.3	32.7	49.6	3.1	3.41

자료: 보험연구원(2015).

그림 Ⅲ-30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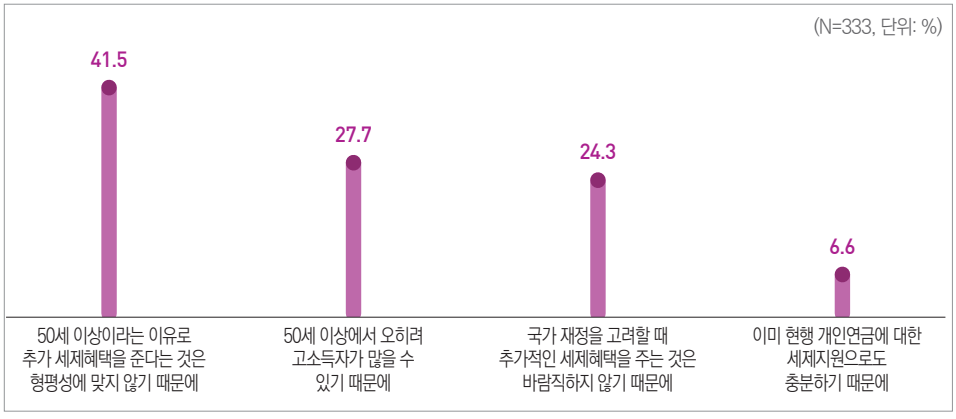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현재 세제혜택을 받는 사적연금의 납부액이 연간단위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연간에 관계 없이 총자산 규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이에 대해 '찬성'은 38.3%(찬성: 38.0% + 적극 찬성: 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는 21.3%(매우 반대: 0.8% + 반대: 20.5%)였음.
- 한편, 납부액 상한 한도 변경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가 43.5%로 높음.
  - 다음으로 '연금은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노후에 받는 것이라는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24.5%)로 나타남.

그림 Ⅲ-31 납부액 상한 한도 변경 견해 **그림 Ⅲ-32 납부액 상한 한도 변경 반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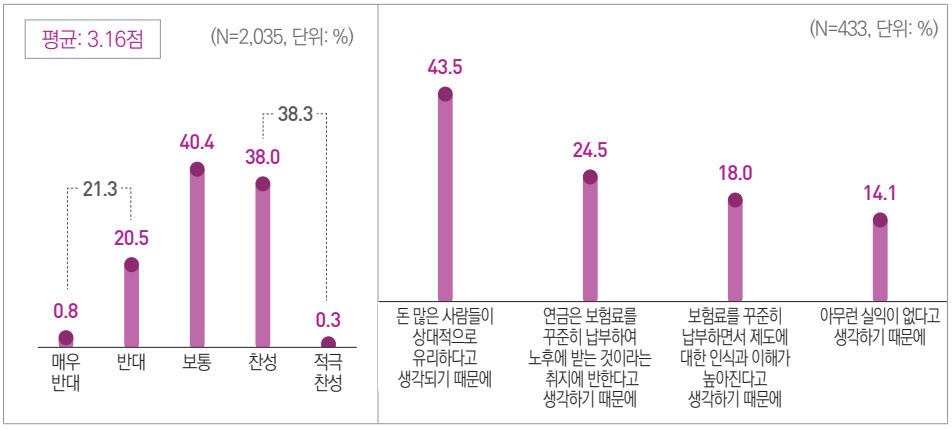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사적연금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응답자의 46.8%가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사적연금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찬성'(찬성: 46.0% + 적극 찬성: 0.8%)하며, '반대'는 16.9%(매우 반대: 0.7% + 반대: 16.2%)로 조사됨.
- 한편, 이에 대해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현재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그 이상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31.5%)와 '현재 1,200만 원 기준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28.0%)가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Ⅲ-33 소득 기준 상향에 대한 견해 **그림 Ⅲ-34 소득 기준 상향을 반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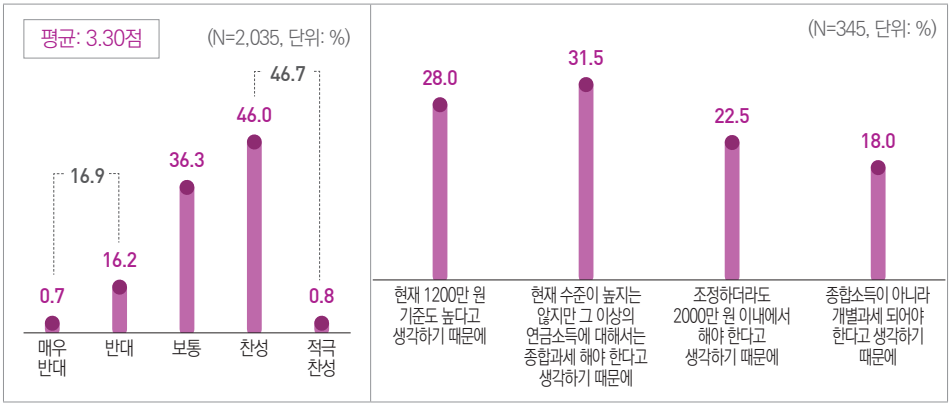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연금저축과 적립형 IRP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개선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은 31.4%로 나타나,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줌.**

- 다만, 조사항목을 다양하게 한 결과, '현행 방식이 좋다'가 31.4%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 '연금저축과 적립형 IRP 구분 없이 총공제대상금액을 연 700만 원으로 한다'는 25.5%, '연금저축과 적립형 IRP이 각각 350만 원씩으로 하여 총공제대상금액을 연 700만 원으로 한다'는 22.6%로 뒤를 이음.

표 Ⅲ-10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개선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현행방식이 좋다	구분없이 총공제 대상금액 연700만 원	각각 350 만 원씩, 총공제 대상금액 연700만 원	적립형 IRP 400만 원 한도, 총공제 대상금액 연700만 원	적립형 IRP 700만 원 설정, 연금저축 세제혜택 없앰	연금저축 700 만 원, 설정, 적립형 IRP세제 혜택 없앰
전체	2,035	31.4	25.5	22.6	11.4	6.1	3.1
20대	351	29.7	24.6	24.6	11.7	6.2	3.2
30대	402	29.9	28.3	20.4	13.4	5.3	2.7
40대	456	29.0	29.3	19.3	11.9	6.5	4.1
50대	407	32.6	22.2	26.3	9.8	6.7	2.5
60세 이상	418	35.6	22.7	23.0	10.0	5.7	3.0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연금계좌의 상속(승계)제도에 대해 '만족'은 44.5%(만족: 42.5% + 매우 만족: 2.0%), '불만족'은 13.7%(매우 불만족: 0.3% + 불만족: 13.4%)임.**

- 한편, 동 제도를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일부 여유 있는 계층을 위한 제도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이 35.8%, '연금계좌를 상속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좁음'이 28.8%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그림 Ⅲ-35 상속(승계)제도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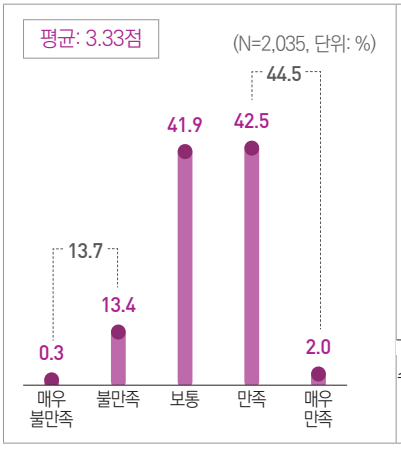

그림 Ⅲ-36 상속(승계)제도를 불만족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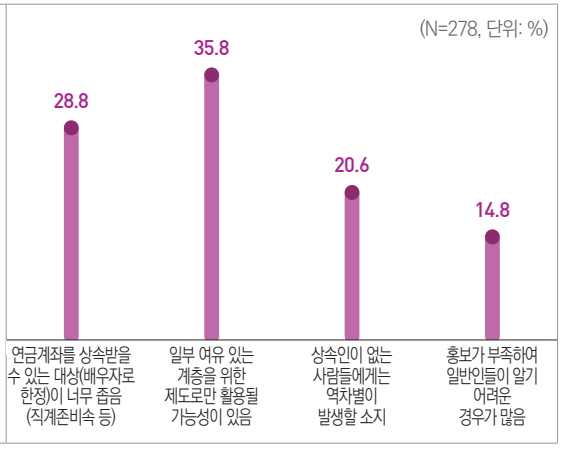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3) 신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 개인종합연금계좌* 도입에 대해 '찬성'은 60.9%, '반대'는 39.1%로 나타남.

* 개인종합연금계좌: 다양한 상품구조와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연금상품 구조, 자산운용, 사업자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그동안의 여러 연금계좌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한 개의 통합계좌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 개인종합연금계좌 도입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가 37.4%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됨.
- 다음은 '제도가 자주 바뀌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29.4%), '분산투자 및 분산관리가 적립금 운용에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23.0%) 등으로 조사됨.

그림 Ⅲ-37 개인종합연금계좌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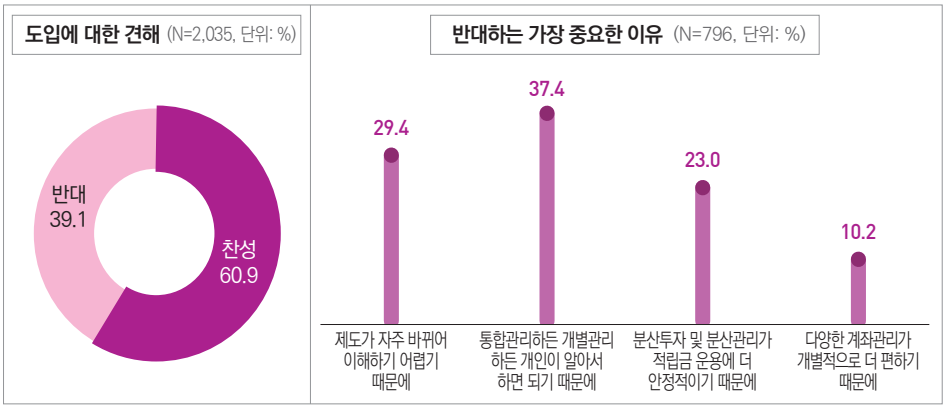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향후 인증형 개인연금*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68.8%)이 '반대'(31.2%)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응답됨.**

* 인증형 개인연금제도: 현재 선진국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일반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의 형태로 정부가 보조하는 '인증형 개인연금제도'가 있음. 즉,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하는 조건으로 인증형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의 수(예,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국가에서 일정비율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거나(보조금 제공),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함.

● 한편, 동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국고보조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31.4%, '국고보조금은 사적연금보다 공적연금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30.0%로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Ⅲ-38 인증형 개인연금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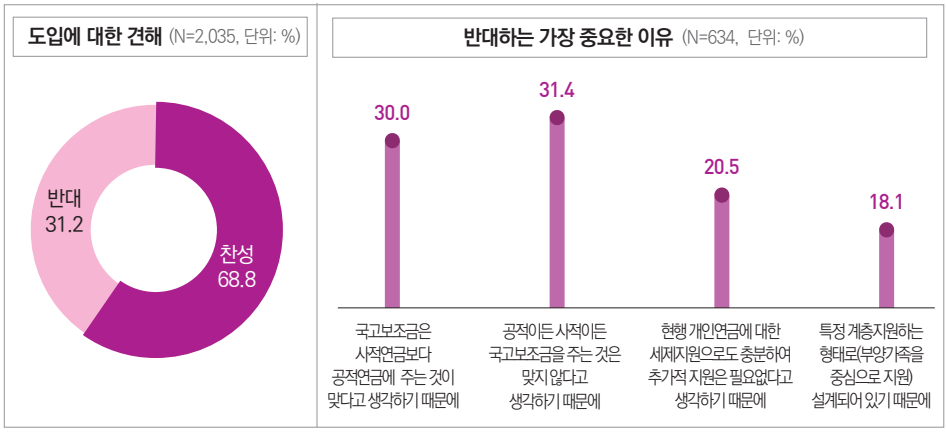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4) 미가입자 인식

◆ **현재 개인연금 미가입자가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이유로는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가 64.4%로 주된 이유로 나타남.**

● 이들에 대해 향후 가입 의향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이(60.4%) 향후 가입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향후 가입 의향이 '있다'는 20대(67.4%), 30대(54.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표 Ⅲ-11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307	39.6	60.4
20대	305	67.4	32.6
30대	293	54.8	45.2
40대	300	36.6	63.4
50대	230	16.7	83.3
60세 이상	178	1.8	98.2

자료: 보험연구원(2015).

그림 Ⅲ-39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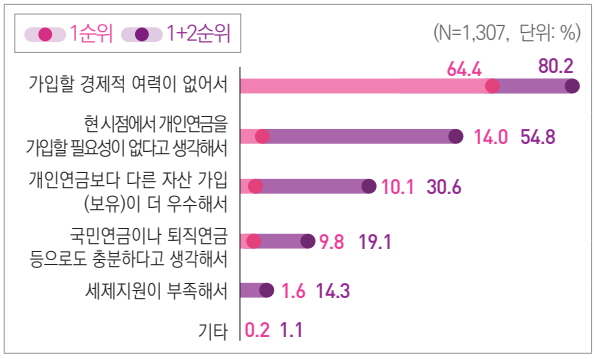

표 Ⅲ-12 향후 개인연금에 가입하려는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	여유로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퇴직(연)금 없거나 부족	공적연금의 재정상태 불안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비
전체	518	45.4	30.2	9.0	7.1	5.4
20대	206	47.8	33.3	4.0	6.3	5.5
30대	161	36.4	29.1	12.0	11.1	6.5
40대	110	52.0	25.4	15.2	3.6	3.7
50대	39	55.0	31.3	4.3	4.6	4.8
60세 이상	3	0.0	34.0	32.0	0.0	0.0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가입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향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54.6%)가 가장 높음.

그림 Ⅲ-40 향후 개인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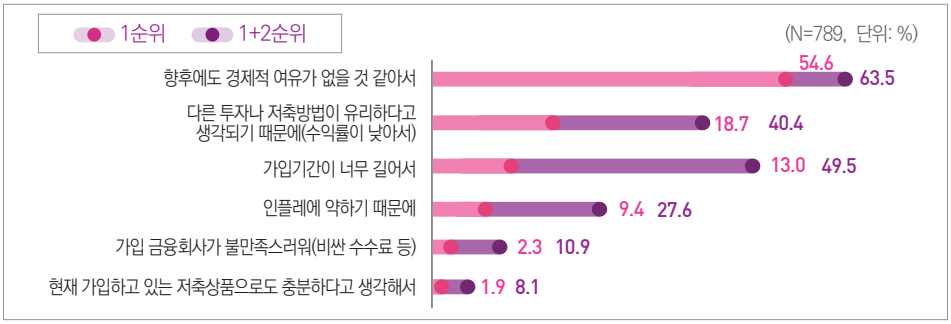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02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 전반적인 퇴직연금 인식

1)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

◆ **향후 원하는 퇴직연금의 수급형태는 '전액 연금'(47.4%), '일시금 및 연금 혼합형'(35.1%), '일시금'(17.5%)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응답자의 원하는 수급 기간은 '종신'(80.8%)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고 싶은 응답자의 주된 이유로는 '세제 및 물가 상승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일시금이 유리할 것 같아서'(69.7%)라고 응답함.

그림 Ⅲ-41 선호하는 연금 수급 기간 **그림 Ⅲ-42 향후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고 싶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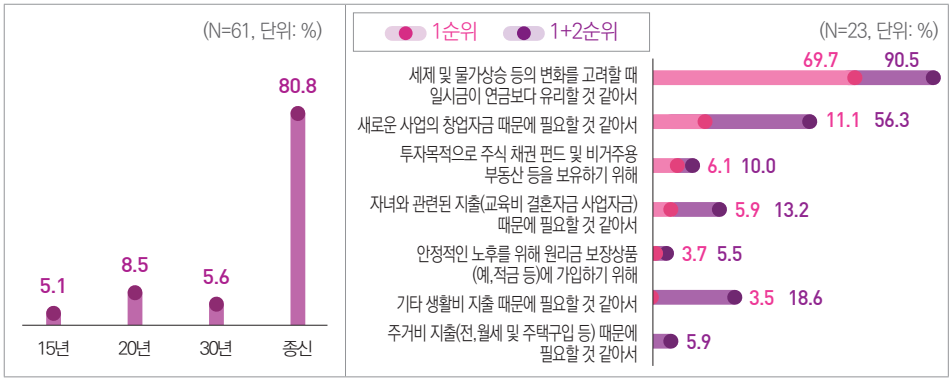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예상하는 퇴직연금 수급 시작연령은 62.95세로 조사됨.

- 연령별로 보면(n=34)으로 '65세'(50.8%)와 '60세'(28.7%)가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그림 Ⅲ-43 향후 자신이 예상하는 퇴직연금 수령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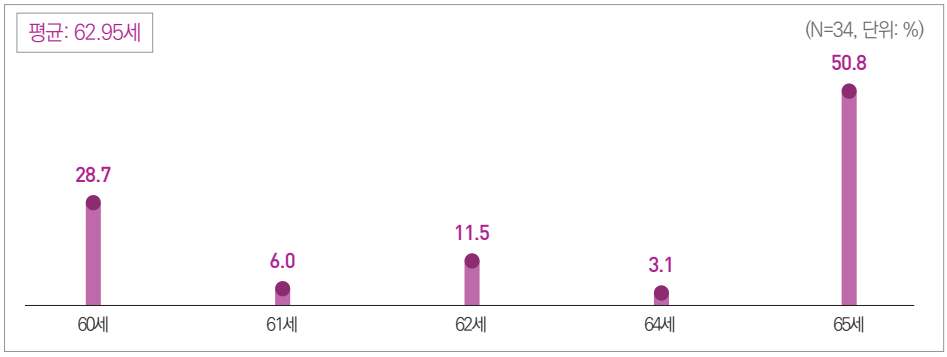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퇴직연금의 예상 월평균 수령액은 44.43만 원으로 조사됨.

- 급여액 구간별로는 '20~30만 원 미만'(24.5%)이 가장 많았으며, '15~20만 원 미만'과 '60만 원 이상'이 21.1% 등의 순이었음.

표 Ⅲ-13 향후 퇴직연금 기대 수령액

(단위: 명, %, 만 원)

구분	사례 수	15만 원 미만	15~20 만 원 미만	20~30 만 원 미만	30~60 만 원 미만	6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127	13.1	21.1	24.5	20.2	21.1	44.43
20대	30	23.1	30.2	19.8	11.4	15.4	39.76
30대	39	2.3	30.6	24.5	24.7	17.8	44.49
40대	36	12.6	10.6	30.0	15.9	30.8	48.96
50대	17	13.3	11.8	22.3	40.1	12.6	39.61
60세 이상	5	38.3	0.0	21.0	0.0	40.7	55.70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가입 후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거의 없음.

- 가입 후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한 경험이 없는 비율이 99.7%임.
- 변경하지 않는 이유로, '회사가 1개 금융회사만을 지정하여서'(34.5%),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은 적이 없어서'(19.5%)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Ⅲ-44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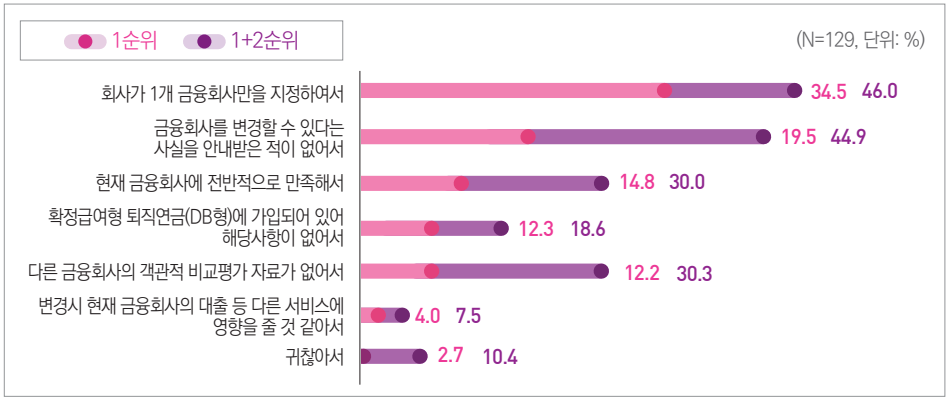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정부의 위험자산의 투자한도 확대조치에 대해, 위험자산 투자한도 확대 유무에 대해 78.5%는 '없다'고 응답함.**

● 위험자산 투자한도 확대 계획이 없는 응답자들은 '원금손실에 대한 불안감'(51.3%),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부족'(19.8%)이 주된 이유였음.

그림 Ⅲ-45 위험자산 확대 계획 **그림 Ⅲ-46 위험자산 투자 확대 계획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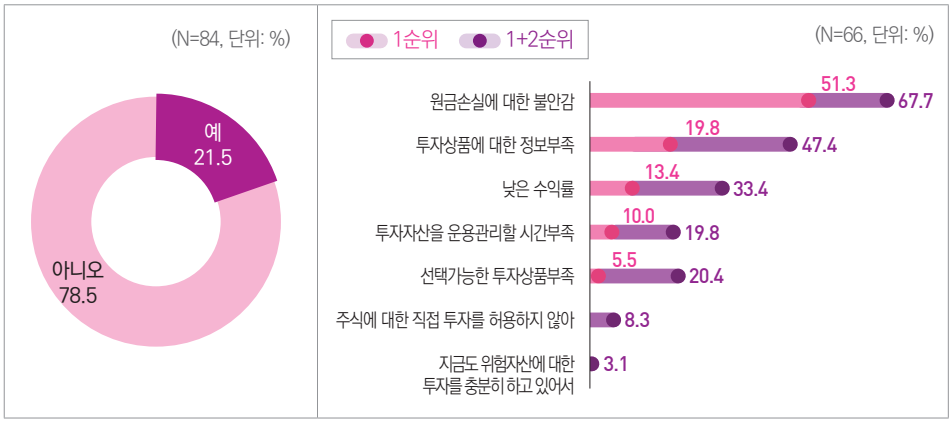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향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의향은 70.9%로 나타남.**

● 2014년 세법개정(연금으로 수령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소득세를 30% 감면)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고려할 때 향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의향은 70.9%로 나타남.

표 Ⅲ-14 향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29	70.9	29.1
연령별	20~39세	69	76.7	23.3
	40~59세	53	62.8	37.2
	60세 이상	7	75.8	24.2
성별	남성	83	74.5	25.5
	여성	46	64.5	35.5

자료: 보험연구원(2015).

2) 퇴직연금 이해도, 만족도 등

◆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조금 안다: 15.9%) .**

●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모른다'는 40.7%(전혀 모른다: 2.6% + 잘 모른다: 38.1%), '조금 안다'는 15.9%로 나타남.

그림 Ⅲ-47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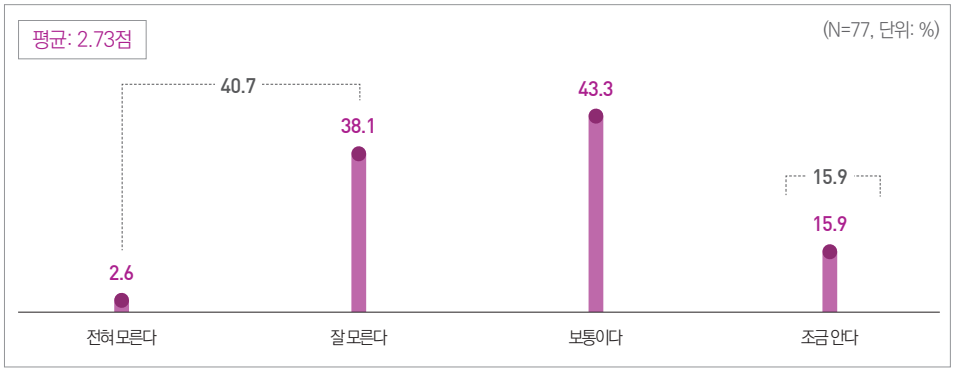

주: 점수는 5점 척도로 산출함(잘안다=5 ~ 전혀 모른다=1, 이하 동일).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인지도 낮음.

● 가입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알지 못한다'(전혀 알지 못한다: 6.0% + 잘 알지 못한다: 45.8%)는 51.8%, '알고 있다'는 16.4%임.

그림 Ⅲ-48 가입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법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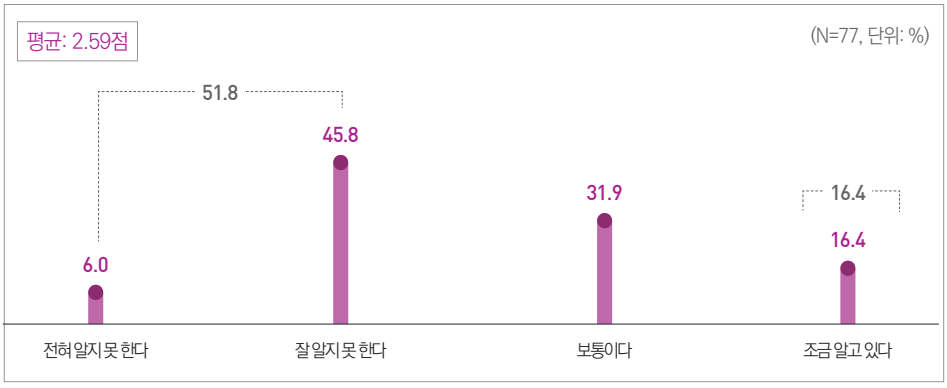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시 '금융회사의 인지도와 안정성'(28.9%)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

●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운용상품 다양성'(21.1%), 운용상품의 높은 수익성(19.1%) 등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Ⅲ-49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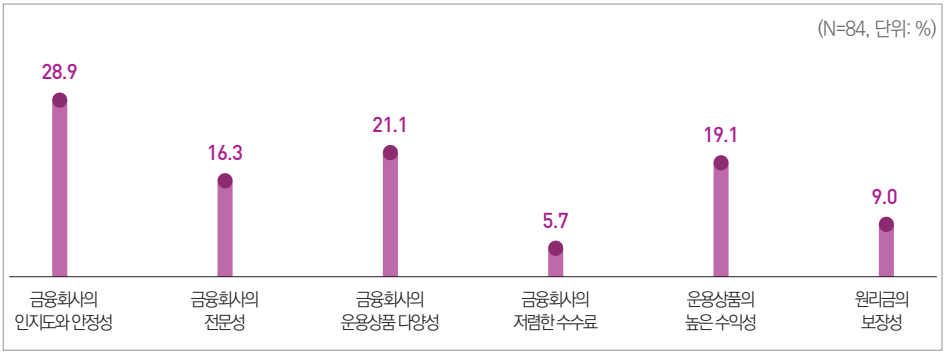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40.1%)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가장 큰 불만족 사항임.**

● 다음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35.8%), '적립금 운용현황 확인 곤란'(14.6%) 순으로 응답함.

그림 Ⅲ-50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과정에 대한 불만족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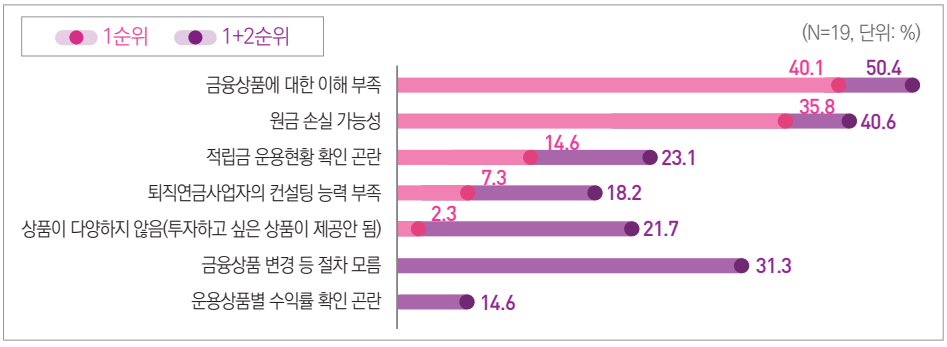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임.**

● 퇴직연금 만족도(5점 척도)는 '콜센타 등 퇴직연금 편의성' 3.37점, '제도설계 및 퇴직연금 관련 컨설팅 서비스' 3.13점, '운용상품 다양성' 3.11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51 가입 중인 퇴직연금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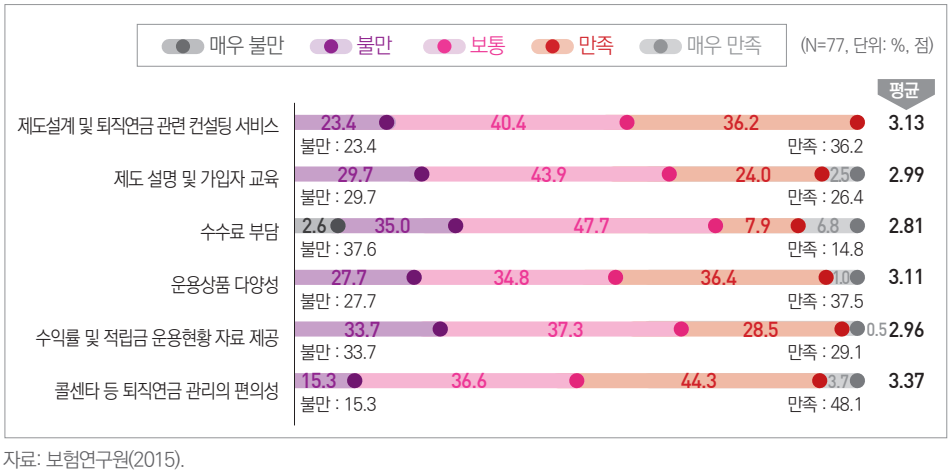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세제지원 확대를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봄.**

●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33.4%), '복잡한 퇴직연금제도의 단순화'(24.5%) 등을 들었음.

그림 Ⅲ-52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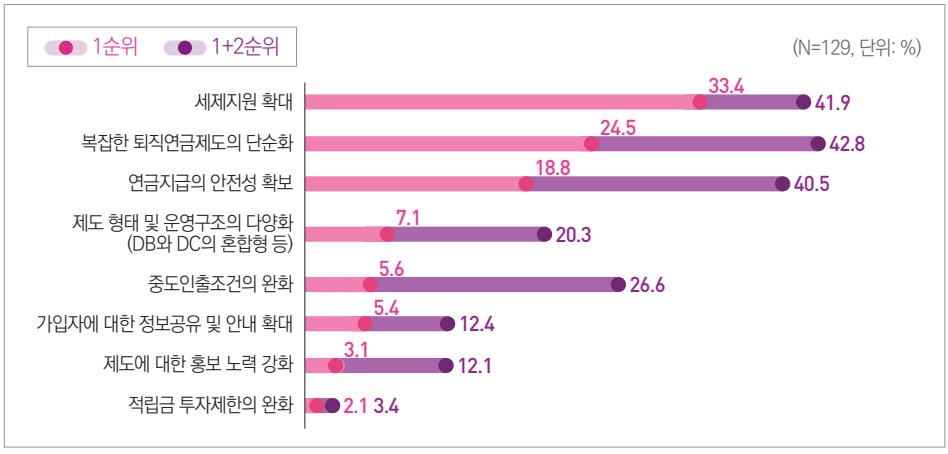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나. 적립형 IRP[18]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추가로 납입한 경험은 '없다'가 93.4%로 나타남.[19]**

● 현재 가입하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n=51)은 '1개'가 97.5%, '2개'가 2.5%로 응답되었으며 평균은 1.02개로 나타남.

●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할 계획을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이 87.7%임.

18 적립형 IRP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가입자와 이를 인식하는 자의 비중이 매우 낮아 응답률이 매우 낮음. 따라서, 동 분석결과는 참고용으로 이해할 필요 있음.
19 총빈도 수가 낮아 통계적 의미는 없음(n=29). 참고용으로 활용함.

그림 Ⅲ-53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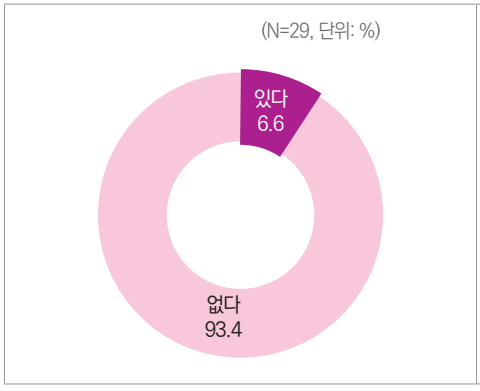

그림 Ⅲ-54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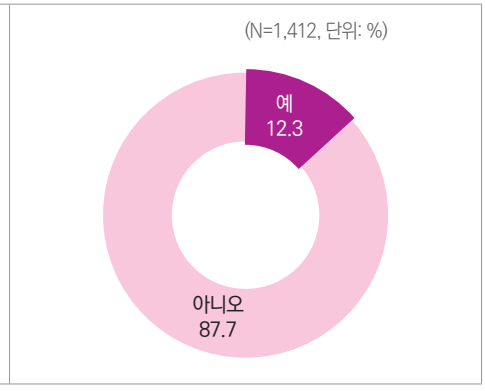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적립형 IRP 가입자의 연평균 납입액은 321만 원 수준이며, 납입액 규모별로는 '150~250만 원 미만'(42.8%), '250만 원 이상'(24.3%) 등으로 조사됨.**

● 적립형 IRP에 가입한 주된 이유로는 '회사에서 일괄 가입하여서'(67.6%),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 같아서'(26.9%)라고 응답함.

그림 Ⅲ-55 적립형 IRP에 가입한 응답자의 연평균 납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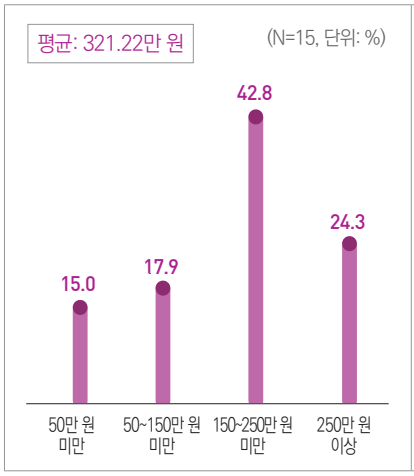

그림 Ⅲ-56 적립형 IRP에 가입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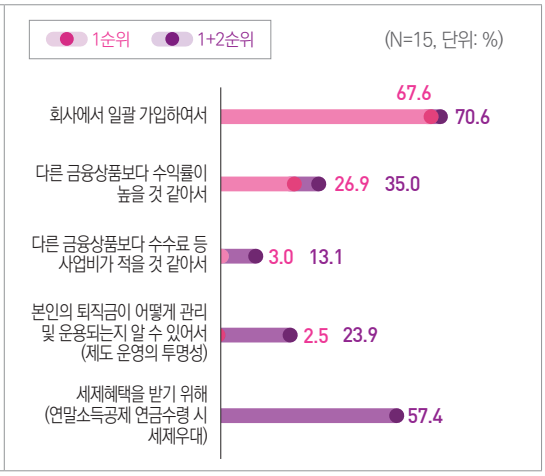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58.0%로 '연금저축' 42.0%보다 다소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됨.**

- 개인형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응답자(n=38)는 '퇴직 일시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적립식 과세이전이 가능해서'(26.8%)를 주된 선호 이유로 응답함.
- 반면, 연금저축을 선호하는 응답자(n=27)는 '나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므로'(44.4%)를 주된 이유로 들었음.

그림 Ⅲ-57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중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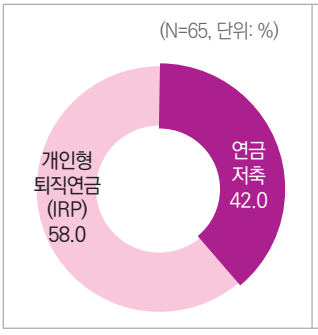

그림 Ⅲ-58 연금저축을 더 선호하는 중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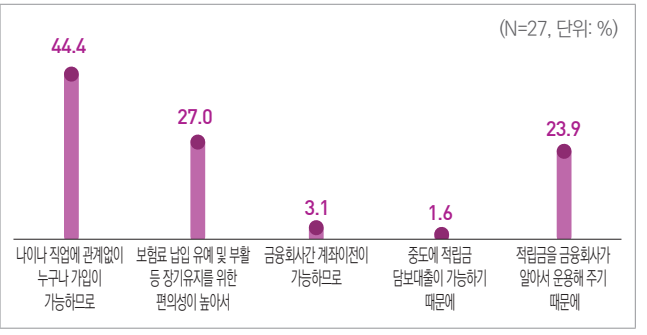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을 확대해야 하는 직종으로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응답함.**

- 현재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 자격을 향후 확대할 경우(n=65) '일용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근로기간 1년 미만)'(32.4%), '자영업자'(29.8%), '전 국민'(29.0%) 순으로 대상 직종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그림 Ⅲ-59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을 확대해야 하는 직종(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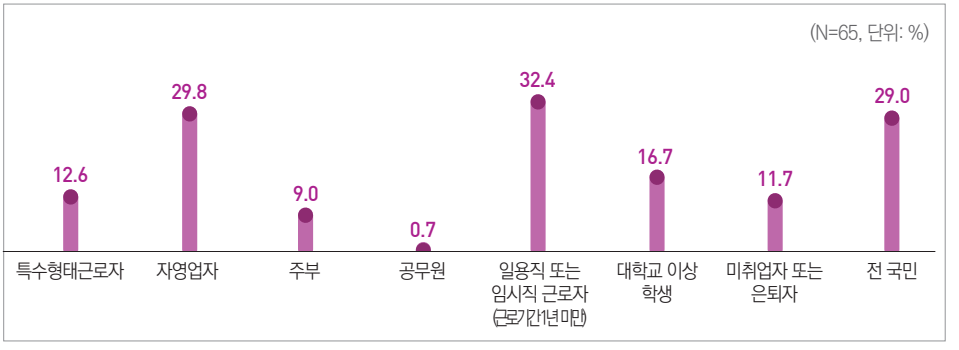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제지원을 우선순위로 응답함.

●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n=65)으로는 '세제지원 확대'(36.5%), '직업에 관계없이 가입'(25.7%), '가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제한 완화'(2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60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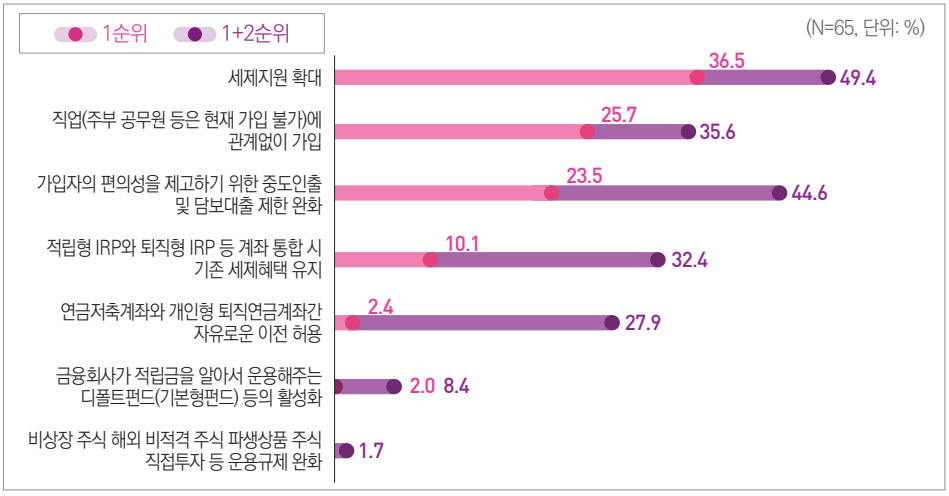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개인형 퇴직연금의 부분인출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은 46.0%임.

● 부분인출 불가능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개선해야 한다'는 55.3%, '개선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44.7%로 나타남.

● 부분인출 불가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n=17)들은 주된 개선 방법으로 '부분인출을 약 30%까지 허용해야 한다'(58.6%)고 응답함.

그림 Ⅲ-6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부분인출 불가능에 대한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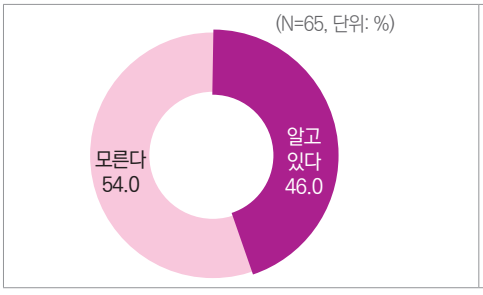

그림 Ⅲ-6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부분인출 불가능에 대한 인지 시 개선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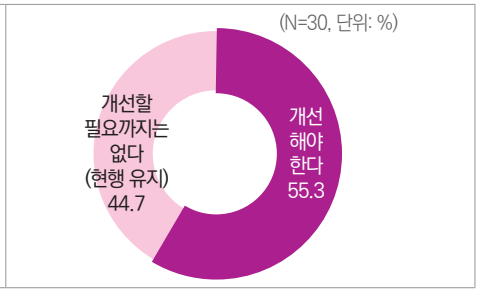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03
사적연금 평가 및 노후준비 교육

가. 사적연금 전반적 평가

◆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모두)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23.6%(불만 13.5%)로 조사되었음.**

● 사적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연금재원의 안전한 관리'가 29.7%, '세제지원 확대'가 28.2%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Ⅲ-63 사적연금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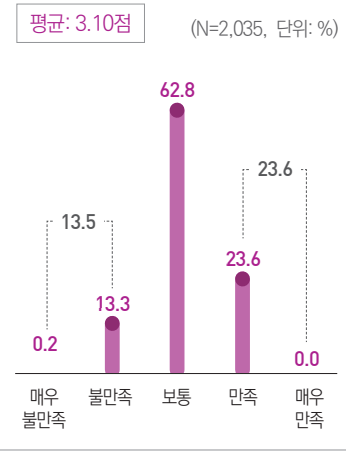

그림 Ⅲ-64 사적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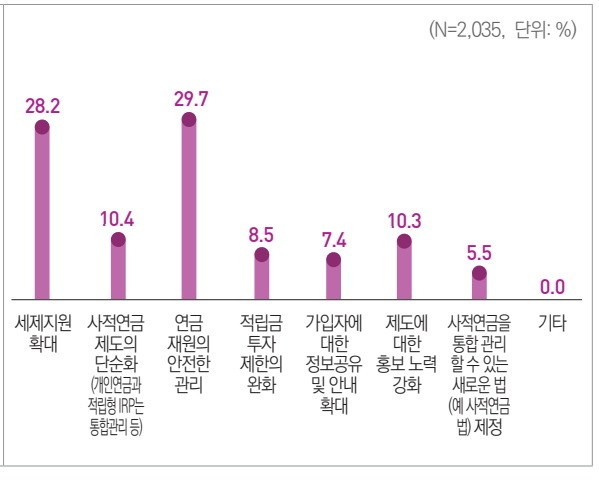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나. 노후준비교육 경험 및 견해

◆ **대부분의 임금근로자가 노후준비교육 경험이 없음(임금근로자 97.2%가 무경험).**

● 노후준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n=24)의 교육 받은 횟수는 '1회'(68.0%)가 대부분임.

표 Ⅲ-15 노후준비교육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827	2.8	97.2
연령별	20~39세	467	2.2	97.8
	40~59세	300	3.1	96.9
	60세 이상	60	6.7	93.3
성별	남성	523	3.0	97.0
	여성	303	2.6	97.4

자료: 보험연구원(2015).

그림 Ⅲ-65 노후준비교육을 받은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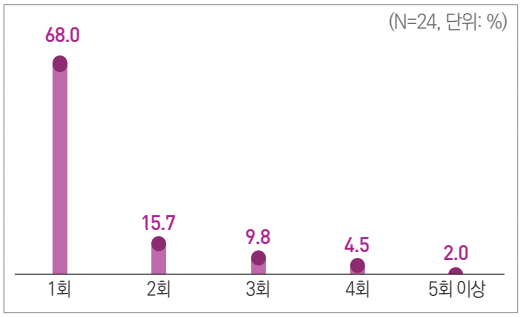

◆ **받았던 노후준비교육의 종류로는 '퇴직 후 생계를 위한 소규모 창업'(32.8%), '재취업 관련 교육'(32.1%),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자산관리(재테크, 금융투자 등)'(22.8%) 등임.**

● 노후준비교육을 받게 된 동기로는 '회사의 권유 혹은 직장 내 퇴직(전직) 지원 프로그램의 이용'(39.6%), '외부 컨설턴트의 권유(보험설계사 등)'(29.0%) 등임.

그림 Ⅲ-66 노후준비교육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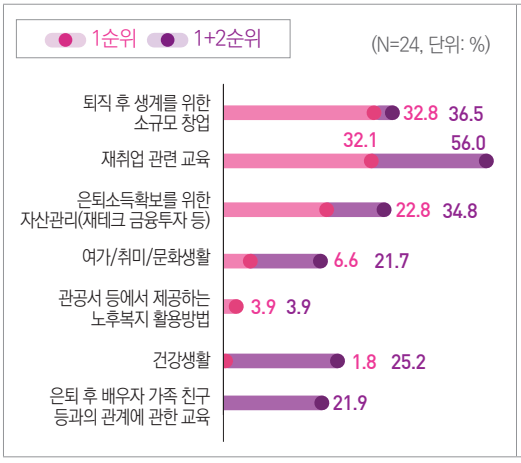

그림 Ⅲ-67 노후준비교육을 받게 된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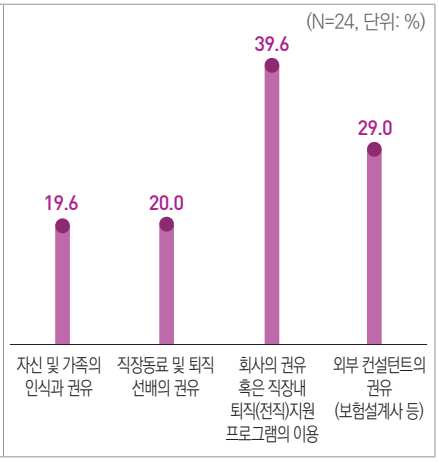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받았던 노후준비교육 중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설명회나 강연 등의 집합 교육'(44.5%), '개인상담 및 컨설팅'(34.9%) 등임.**

● 노후준비교육을 주관한 기관으로는 '금융회사 및 금융관련 전문가'(37.6%), '민간 고용서비스 등 민간 전문 컨설턴트'(19.4%), '종사하던 회사'(19.3%) 등으로 나타남.

그림 Ⅲ-68 가장 선호하는 노후준비교육 형태 **그림 Ⅲ-69 노후준비교육 주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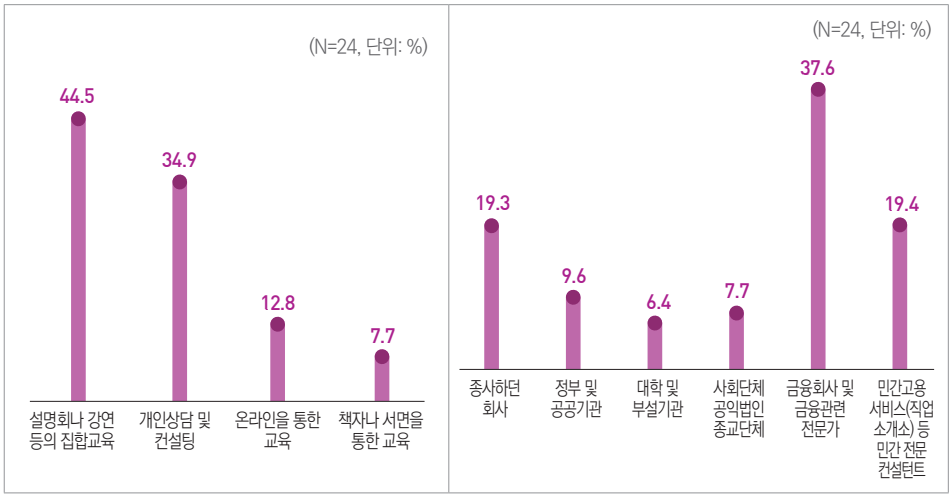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은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n=24) 중 '만족'하는 응답자가(57.9%)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만족 57.9%, 보통 35.5%, 불만족 6.6%로 조사됨.

◆ **노후준비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48.8%)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51.2%)가 비슷하게 나타남.**

● 노후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필요한 교육의 종류로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자산관리(재테크, 금융투자 등)'(27.9%), '재취업 관련 교육'(25.0%)을 응답함.

● 노후준비교육(상담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주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정부 및 공공기관'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Ⅲ-70 노후준비교육 필요성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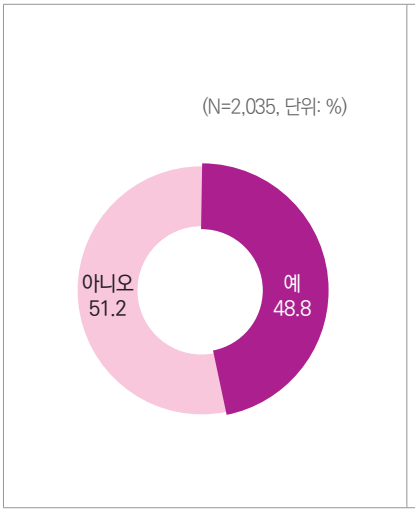

그림 Ⅲ-71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후준비교육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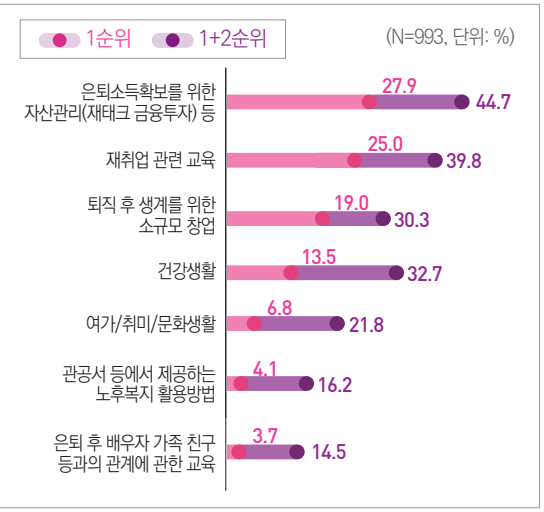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